

제284회 임시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378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(안) 검토보고서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378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1. 8.
- 회 부 일 : 2021. 8.

2. 제안이유

상위법인 「폐기물관리법」의 일부 개정과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면 개정 그리고 「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별표 1의 일부 개정 및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적용하여 구 조례 정비

3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에 따른 같은 법 제159조를 제176조¹⁾로 변경 (안 제7조)

나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²⁾에

1) 제176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쳐 있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
2) 제16조의3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(이하 “안전기준”이라 한다)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
- 다른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(안 제8조의2)
- 다. 2016년 단체협약에 따른 “환경미화원” 을 “공무원” 으로 변경 (안 제8조제2항제5호, 안 제10조의2제4호)
- 라. 「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³⁾」에 따른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추가로 별표1 개정 (안 별표1)
- 마. 대형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수수료가 2010년 개정 이후 정비가 없어 품목신설 및 가격조정 등 별표6 개정 (안 별표6)
- 사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적용하여 띄어쓰기 및 문구 등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
「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
「지방자치법」 제176조

-
2.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.
1.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·운영할 것
 - 가.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
 - 나.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
 - 2. 안전화, 안전조끼,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
 - 3.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. 다만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 - 가.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
 - 나. 3명(운전자를 포함한다)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
 - 다. 폭염·강추위, 폭우·폭설, 강풍,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
 - 3) 재활용품 혼합배출·수거에 따른 재활용품 품질 저하, 현행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방식 문제 개선,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('20.2~) 추진 관련 별도배출 항목 지정 등 재활용품 품목 조정 및 배출요령 현행화

다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의안공고 : 2021. 8. .

5. 검토의견

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서 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으며,

「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재활용 별도배출 품목을 지정하여 품목조정 및 배출요령을 현행화를 도모하였으며,

무엇보다도, 2010년 개정 이후 정비가 없었던 대형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과 관련하여 새로운 품목을 신설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대형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.

이번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조례」 일부 개정을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·운반하는 공무원과 운반대행업자의 안전을 담보하고, 그 동안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한정된 품목지정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편함 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